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28일, 김선교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4.) 상정, 축조심사,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의원)

현행법은 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격리·이동제한·살처분, 관련된 사람, 차량 등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등의 조치,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등 방역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림피스킨병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소에서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2023년 10월 국내 한우농장 사육소에서 처음으로 발생 이후 그해에 107건, 2024년에는 24건 발생으로 집계되는 등 현저히 발생률이 줄었으며, 백신접종에 의해 감염 및 전파 차단이 가능하고, 감염되더라도 폐사된 사례가 없고 감염된 소가 일정 기간 격리 후 회복되는 질병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음.

통상의 제1종 가축전염병은 폐사율 혹은 전파율이 높거나 인수공통 전염병인 특징이 있는데 림피스킨은 이런 특징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 문헌 및 전문가 의견처럼 적절한 예방접종과 농장 내 흡혈 곤충 방제와 소독, 감염된 소의 한정된 격리 등을 통해 질병 확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브루셀라병 또는 결핵병과 같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으로 제도개선해야 한다는 농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축산발전협의회,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림피스킨

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발생 농장 반경 5km내 방역대에 사육되는 모든 소의 이동제한, 가축시장 폐쇄 조치, 축산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축산물의 부정적 인식 확산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음.

이에 렘피스킨 관련 그간의 방역조치를 통해 확인된 질병 특성, 발생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질병으로 정부가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정부 주도의 질병 관리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렘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나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가. 림피스킨병의 가축전염병 등급 조정

현행법은 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전염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범위의 구분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직접 제1종, 제2종, 제3종 가축전염병을 각 질병명으로 열거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음.

제1종 가축전염병은 일반적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빠르므로 ① 농장 전체 또는 양성축에 대한 살처분, ② 예방적 살처분, ③ 발생·역학 농장 관련 이동제한 등의 방역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취하게 되는 ① 농장 전체 또는 양성축에 대한 살처분(주로 양성축 살처분) 명령, ② 발생·역학 농장 관련 이동제한(사람의 이동제한은 제외) 등의 방역 조치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축산 농가에 보다 큰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하는 조치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렘피스킨병은 2023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생 후 2023년 107건, 2024년 24건이 발생하고 2025년 3월까지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고, 백신접종 및 매개체(침파리·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에 의해 감염 또는 전파 차단이 가능하며, 감염되더라도 폐사율이 낮고 일정 기간 경과 후 회복되는 특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고, 추운 시기에 매개체가 사멸하므로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의 계절 특성상 렘피스킨병의 토착화가 어렵다는 입장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낙농육우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가축전염병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1종 가축전염병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통하여 관리하는 것은 축산 농가에 대한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렘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이 아닌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 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렘피스킨병의 분류를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질병 통제가 가능하므로 정부 주도 방역에서 민간 자율 방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우낙농육우협회는 럼피스킨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닌 비교적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질병인바 백신 접종을 하면서 관리가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